

심각한 범죄행위인 보험사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사해로 증상 입어도 보험금 못 탄다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 내년 4월부터 적용

내년 4월부터 고의로 사고를 내면 증상을 입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지금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자해로 증상을 입더라도 사망에 준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양쪽 시력이나 청력을 모두 상실하거나 두 팔이나 다리를 모두 잃는 경우 증상에 해당한다.

아파트·상가·외제차 등 구입 6년6개월간 호화 도피생활 공소시효 6개월 남기고 달미

달미는 옷가지만 찾았을 뿐이다. 끝내 발견되지 않은 그는 사망 처리됐다. 다음 해 3월 정씨의 아내 서모(41)씨는 "남편이 지난해 바다에 뛰어들었다"며 3개 보험사 사망 보험금 2,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11월 달미가 사망을 수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부가 공모해 보험사기 남편 실종처리 12억 타내

남편의 눈을 피해 달미는 호모(46)씨가 물고 온 배에서 숨어 있었다. 이어 육지까지 숨어들었다. 하씨와 부부에게서 수천만 원의 돈을 빼돌린 정씨는 대전과 부부의 도피 생활을 알게 되자 달미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달미는 12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 남편을 실종처리했다.

유형비 마련 때문 청년 보험사기 급증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 내년 4월부터 적용

고의사고 피하고 과잉보험가입 과다청구 가짜 입원 환자로 보험금 25억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 내년 4월부터 적용

가구당 보험사기 140,000원 적발금액 3,305억원 연간 22조원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 내년 4월부터 적용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2조원으로 추정되며, 한 가구당 연간 약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에게 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생명 또는 신체를 훼손하거나 허위 입원, 허위장애, 방화, 고의사고, 차량수리비 과다청 구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보험 사기가 됩니다.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받습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는 검찰, 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 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보험사기 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영구 보존됩니다

보험사기 행위는 금감원, 생·손보험회, 보험회사의 보험사기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반드시 적발되고, 관련 정보는 영구히 보존됩니다.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기여도와 적발금액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기 신고처

- 금융감독원 1588-3311 <http://insucop.fss.or.kr>
-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02-530-3751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080-990-1919 www.knia.or.kr